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48
----------	-------

발의연월일 : 2023. 12. 5.

발 의 자 : 정경희 · 유상범 · 박형수
김영선 · 박대수 · 김성원
류성걸 · 이인선 · 정우택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육아도우미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원 확인 증명서를 요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반면, 가사근로자법에는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할 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

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3조의2 신설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를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 범죄경력 조회 결과,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결과 등의 정보(이하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13조의2에 따른 가사근로자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사근로자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

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가사근로자에 대한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기재사항, 제3항에 따른 증명서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3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을 이용자에게 제

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26조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제1호 중 “제7조제5항”을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인
증을 받지 아니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5항”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7
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가사근로자 인적사항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
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사서비
스 이용자에게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5. (생략)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①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u> ----- -----.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u>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결과 등의 정보(이하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u>

<신 설>

② · ③ (생 략)

<신 설>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
용자에게 제13조의2에 따른 가
사근로자 신원 확인 증명서 사
본을 교부한 때에는 이용자에
게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을 제
공한 것으로 본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13조의2(가사근로자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
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
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
부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가사근로자에 대한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기재사항, 제3항에 따른 증명서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5. ~ 10.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벌칙) ① (생략)

② 제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사칭한 자

3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4. 제9조제4항-----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5항-----

-----.

③ -----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5항-----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